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44호

「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 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」 제정(안) 행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, 필수 발생 비용의 종류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# 2. 주요내용

가.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함(안 제3조) 나.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(안 제4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-2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

- 전자우편 : rlawlgus0410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529

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(044-201-408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